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사 건</td><td colspan="2">2022개회000000 개인회생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신청인
(채무자)</td><td colspan="2">성명 :
주소 :
전화 : (이메일 :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상대방
(금융기관)</td><td colspan="2">성명 :
주소 :
전화 : (이메일 :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조정대상 주택담보대출의 내역</td><td colspan="2">1. 대상 주택의 표시 :

2. 대상 주택담보대출채권액, 이율 및 채권최고액 :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요건 해당 여부</td><td>채무자 단독소유</td><td></td><td>O</td></tr>
<tr><td>주택가격 (6억원 이하)</td><td>_____원</td><td>O</td></tr>
<tr><td>부부합산 연소득1) (7,000만원 이하)</td><td>_____원</td><td>O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3">소명자료 첨부여부</td><td>1. 부동산등기부등본</td><td>O</td></tr>
<tr><td>2. KB부동산 시세 또는 개별공시가격 등 주택가격 소명자료</td><td>O</td></tr>
<tr><td>3. 부부합산 연소득 소명자료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소득금액증명서 등)</td><td>O</td></tr>
</table>

위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.

2022. 0. 0.

신청인 _____ (인)

1) 세전 소득을 기준하여 소득세, 주민세,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

안 내 문

1.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'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'을 신청하였는바, 아래 2.항 내지 5.항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'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'은 담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에 대한 재조정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. 위 절차에서 담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고, 채무자가 담보채권자에게 그 합의에 따른 변제를 완료할 경우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

3. 채무자는 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회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즉시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, **법원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회부 결정문 사본, 채무자의 소득에 관한 서류 (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서류 포함),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**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또한 이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.

4.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실시기간은 법원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약 8주 동안이며,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약 4주 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5.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채무자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,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① 채무자가 「신용회복지원협약」제3조제2항의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   ② 담보주택에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
   ③ 채무자가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,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   ④ 채무자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 ⑤ 그 밖에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절차에 의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
서 울 회 생 법 원